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31
----------	------

발의연월일 : 2025. 4. 7.

발 의 자 : 황운하 · 김재원 · 박은정
민형배 · 김준혁 · 윤종오
이해민 · 김준형 · 박수현
정춘생 · 강경숙 · 신장식
차규근 · 서왕진 · 백선희
김선민 의원(16인)

주 문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채용비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한다.

1. 심우정 검찰총장의 아래에 열거하는 내란가담 의혹 사건

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12·3 내란사태의 주요 증거로 여겨지는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등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경찰의 공무집

행을 방해한 행위

나.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인용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말고 석방 지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한 사건

2.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의 아래에 열거하는 채용비리 관련 의혹 사건

가. 국립외교원은 2024년 1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자격 조건으로 하는 채용 공고를 냈음. 심우정의 자녀는 당시 국제대학원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여서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채용비리 의혹

나. 외교부는 2025년 1월 3일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이후 2월 5일 응시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

상인 자, 영어 능통자'로 변경해서 재공고했는데, 애초 경제 전공이었던 응시 자격이 유지됐더라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는 응모 자체가 불가능했고, 국립외교원에서 일한 기간이 8개월 3일에 그쳐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격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합격자로 선발된 채용비리 의혹

3.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과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에 선발되어 민간장학금을 수령 한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4. 심우정 검찰총장의 재산은 108억 원, 자녀는 5천만 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최저신용 자특례보증 대출', '햇살론 유스' 등 서민정책금융 상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았다는 의혹

5.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반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함.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방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 폭거임.

검찰은 2025년 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여 6개월간 구치소에 머물며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근거를 제시하였음.

이에 수사팀은 「형사소송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였고, 석방 지휘서가 팩스로 구치소에 도착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 되었음.

검찰은 과거 구속 취소 피고인을 석방한 뒤 즉시항고를 통해 다뤄왔음에도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방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헌법과괴범죄자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여 특혜를 주었음.

이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에 공문을 발송하여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하면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원래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로 산정하라며 국가사법질서의 혼란을 야기하였음.

한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거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체포·구속하여 신변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의 3차례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여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

심우정 검찰총장의 위와 같은 수사지휘 등은 명백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내란수괴의 도주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적극 방조하는 방법으로 내란에 적극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후보자 청문회 중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과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장학생에 선발되어 민간장학금을 수령한 건에 대한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었으나, '사생활 문제'라며, 자녀의 장학금 수혜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자녀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대출', '햇살론 유스'

등 서민정책금융 상품 부정대출의혹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만 밝혀 이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최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의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거나, 자녀가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았는데 부정하게 합격했다는 취업특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인 검찰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자녀채용비리 및 부정대출 의혹은 국가 사법시스템의 국민적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 의혹으로 진상규명이 매우 시급함.

심우정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인바, 현직 검찰총장의 영향력과 수사에 대한 부담 및 그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로 볼 때 신속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독립적 지위

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채용비리’ 등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매우 큼.